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77
----------	------

2021년 03월 0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찬성자 18명)
- 나. 발의일자 : 2021년 02월 05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02월 09일
- 라. 상정결과 :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03월 0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소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체육 관련(생활체육진흥·체육복지 진흥·체육인 인권) 조례를 통합운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회의 법인설립 및 운영비 보조 등을 명문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자 함(안 제20조)
-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제정 목적

- 서울시는 체육과 관련한 개별 조례를 통해 체육활동 진흥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동 제정안은 이 중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을 육성·지원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체육복지 진흥 조례, 체육인 인권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21.6.9.시행)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회 법인 설립 등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정의 필요성

- 서울시는 시체육회와 기능과 조직이 유사한 체육진흥협의회의 관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폐지('96)한 이후, 별도의 조례나 규정을 통해 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21.6.9.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19.8.6.) 등을 근거로 지방체육회의 법인설립과 시도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체육진흥조례를 통해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스포츠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생활체육진흥 조례, 체육복지 진흥조례, 체육인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체육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총 2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 안 제2장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안 제5조부터 제14조), 안 제3장 체육진흥(안 제15조부터 제22조), 안 제4장 체육인 인권(안 제23조부터 제27조) 및 3개의 부칙을 규정함.

- 안 제1장 총칙 중 안 제1조(목적)에서 동 조례의 목적을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으로써 하고 있음.

안 제2조(정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체육복지 진흥 조례, 체육인 인권조례 등에서 사용한 용어를 준용하여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안 제4조(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장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안 제5조(설치), 안 제6조(기능), 안 제7조(구성), 안 제8조(임기), 안 제9조(직무), 안 제10조(회의), 안 제11조(위원의 해촉), 안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13조(간사 등), 안 제14조(수당과 여비)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를 위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지자체의 장, 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위원(7명~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개정('21.6.9.시행)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전 법에서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고, 조직 및 운영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문화체육관광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지방체육회의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체육회장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의 임의기구로 운영하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것임.

또한 협의회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따르고 있음.

- **안 제3장 체육진흥**에서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를 통합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되었던 생활체육 진흥 사업(안 제16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사업(안 제17조)을 나열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전문체육의 진흥)에서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관련 단체 육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안 제18조(재정 지원)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그 밖

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되었고 이후 지방체육회의 지위와 재정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21.6.9.시행)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동 제정안에 반영된 것임.

안 제20조(법정법인화)는 서울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체육회(서울시체육회)의 법정법인화는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으로 특수법인화하여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및 책임을 분명히 규율하는 것임.

개정 전 법에서는 통합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만을 법정법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산하 경기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등을 통합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회·지부”로 규정하였음.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독립성 및 위상이 강화되고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병렬적인 위상을 갖는 별도의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됨.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반면, 같은 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를 근거로 지방장애인체육회 법인 설립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현재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직도 서울시장이 겸직 중임.

<시체육회 법정법인화 관련 주요 쟁점>

○ 기관 측면

- 대한체육회 서울지회, 공직유관 단체(연간 지자체 10억원 이상 보조 단체)
- 서울시체육회의 정관(각종 규정 포함) 및 예산 지원 기관이 달라 운영 상 혼란이 있음
 - 대한체육회 지회로 정관 승인 및 임원 인준 등을 받아야 하지만, 행·재정 지원 미약
 - 공직유관단체('20년 市 보조금 약 642억원)로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 '20년 세입 예산 약728억원 중 市 보조금은 642억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음

○ 법적 측면

- 임의 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음
 - 임의단체로 법률상 권리 및 의무 주체가 불분명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서울시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음(의무사항 아님)

- **안 제4장 체육인 인권**에서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 체육인 인권 교육,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는 체육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20.10.공포)하였으나 동 제정안을 통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경기도, 대구, 대전, 인천 등 8개의 시도에서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있음.

- **안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 및 안 제20조**는 근거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동 제정안으로 통합되는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조례」를 폐지하도록 함.

라.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 생활체육진흥 조례, 체육복지 진흥 조례, 체육인 인권 조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입법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21년 6월 9일 시행을 앞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시장과 시 체육회 회장을 포함하여 구성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에 따른 시도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견고히 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안

(김소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7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소양, 김제리,
김창원, 김춘례, 김태호,
김화숙, 노승재,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유 용, 이성배, 이호대,
최 선, 최영주, 황규복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체육 관련 (생활체육진흥 · 체육복지 진흥 · 체육인 인권) 조례를 통합운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회의 법인설립 및 운영비 보조 등을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 다.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자 함(안 제20조)

마.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교육,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2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7.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경기단체”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와 그에 가맹한 단체, 서울특별시에 있는 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를 말한다.
9. “체육인”이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10.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1.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12.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3.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

제5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3. 체육복지 및 인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3.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
4.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7.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장애인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임기) ①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간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진흥

제15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해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체육복지의 진흥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내·외 교류 지원
5. 자치구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7. 그 밖의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해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6.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7.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8.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9.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0.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체육복지의 진흥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법정법인화) 서울특별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21조(회계 감독 등) ① 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체육단체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체육인 인권

제2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
2. 대상별 핵심 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4.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의 실시
5.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세울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체육인 인권 교육) ① 시장은 체육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단체와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초·중·고, 대학, 실업팀, 장애인 등 선수의 유형과 선수·체육지도자 등 교육 대상에게 특화된 교육 체계(정서적·심리적 안정 지원을 포함한다)를 마련하게 하고 교육 체계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교재 개발,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시장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14조 및 제20조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2.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3.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육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은 제18조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문서번호	2021020500000012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소영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민향식 팀장 노이안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2.05.	내용문의 : 010-2326-1900
회신일 : 2021.02.05.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 제5조(설치), 제13조(수당과 여비)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44,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협의회 구성·운영 (제8조의4)	8,800	8,800	8,800	8,800	8,800	8,800	44,000
총비용(b-a)		8,800	8,800	8,800	8,800	8,800	8,800	44,000

○ 비용추계 전제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인원은 10명으로 하고 분기별 1회(연4회) 개최

○ 비용추계 세부내역

- 총비용 = 8,800천원(연간비용) × 5(년) = 44,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200천원×9명×4회 = 7,200천원
 - 업무추진경비 : 40천원×10명×4회 = 1,600천원

※ 위원회 수당은 공무원 1명을 제외한 9명, 운영경비는 10명을 기준으로 추계
 ※ 서울특별시 2021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참조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150,000원(2시간 이내), 초과 50,000원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제한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예산분석팀장 민향식

분석관(주무관) 노이안

☎ 010-2326-1900

e-mail : 78901@seoul.go.kr